

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9. 3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호로 2022년 9월 18일 차인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하수법」의 개정(시행 2022. 1. 6.)사항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, 수질검사 주기 등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출지하수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유출지하수의 이용(안 제3조의2)
- 나.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 등(안 제3조의3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,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(2022. 9. 14. ~ 9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하수법」의 개정(시행 2022. 1. 6.)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출지하수*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* 지하철·터널,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

○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

- 서울시에서는 2021년 6월, 지하공간 개발 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‘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’을 전국 최초 제작함.

[서울시, 버려지는 ‘유출지하수 효율적 활용’을 위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_ 2021. 6. 14. 서울시 보도자료]

-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를 도로 살수,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했으며, 2021년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「지하수법」을 개정(시행 2022. 1. 6.)한 바 있음.
- 또한, 환경부에서는 2020년 기준 연간 1억 4천만톤의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지만, 이 중 11%만 활용되고 있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‘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’을 마련해 발표함.

[버려지던 유출지하수, 탄소중립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_ 2022.7.5. 환경부 보도자료]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의3에서는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 확보 등을 위하여 수질검사 및 정기수질검사가 필요함에 따라, ‘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’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의 상황에 따라 수질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으로 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절차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 주기 등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하수법

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1. 지하철·터널 등 지하시설물
 2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
 3.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
-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5. 22., 2018. 6. 8., 2021. 1. 5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6. 8., 2021. 1. 5.>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-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

2 지하수법 시행령

제14조의2(유출지하수의 용도)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. <개정 2014. 11. 11.>

1. 생활용수 중 소방용·청소용·조경용·공사용·화장실용·공원용 또는 냉난방용
2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

3 지하수법 시행규칙

제15조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”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
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을 말한다.

1. 지하철 역사(驛舍) 1개소: 1일 300톤
2. 터널, 전력구(電力溝) 또는 통신구(通信溝) 각 1개소: 1일 300톤
3.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: 1일 30톤

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
2. 공사평면도,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

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

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

2.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

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

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,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(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)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현장사진

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⑪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